

#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7
----------	-----

제출년월일 : 2002. 11. .

제출자 : 김포시장

##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 개정이유

김포시행정기구 및 직제개편(2002. 8. 20)에 의거 김포시시립도서관이 팀 체계에서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개정하여 시립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동 조례 제5조(담당)에 관장이 업무를 총괄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규정에 도서관 운영은 관장이 지휘 감독 토록 명시되어 있어, 이중 규정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안 제5조)
- 기증된 도서는 복본여부, 자료의 가치, 이용가능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관리하여 기증도서의 효율성 제고(안 제12조)
-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되어있어 현 직제에 맞게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도서관장을 추가(안 제14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김포시조례 제 호

##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4조제3항중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5조 (담당)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lt;삭제&gt;</p>
<p>제12조 (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후 대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조 (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p>
<p>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당연직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          .....          ⑤ (생략)</p>	<p>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행정국장.....          ④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당연직은 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          .....          ⑤ (현행과 같음)</p>